

의견조정위원회규정

제 정 2016.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학사행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의 과정 중 공청회 절차를 거친 후 학사행정에 부작용 또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하여 본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 중 공청회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 또는 조율한다.

1. 대학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과 정원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사행정 및 대학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 해당자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1. 교수회 의장 또는 의장이 위임하는 경우 위임받은 교수 2인
2. 학생회 회장 또는 회장이 위임하는 경우 위임받은 학생
3. 직원회 의장 또는 대표가 위임하는 경우 위임받은 직원
4. 의안 소관 처장
5. 그 외 해당 사안과 관련성과 전문성이 높은 사람

②전 항의 1호 내지 4호 해당자는 당연직으로 하며, 제5호 해당자는 총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회의의 개최) ①제2조 각 호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그 후속 조치로 구성원의 의견을 조율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개최 사실을 위원 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 의안과 그 설명 자료는 회의 개최통지 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적위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위원이 회의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당해 사안 조정에서 제척된다.

제6조(회의 결과의 처리) ①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조율 또는 조정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전 항의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련 당사자는 본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공개) ①위원장은 위원회 개최를 확정할 경우 회의 안건,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등 처리 과정을 지체 없이 본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회의결과는 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원 회의 2/3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세칙의 제정)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